

(사)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3장 제 1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는 본회에 등록된 회원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 공정성을 확보하고 본회 사무국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본회, 프로모터 및 그 단체에 속한 팀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 4.1. 각종 규정 위반 행위 심의 및 결정과 집행관련 사항
- 4.2.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과 집행관련 사항
- 4.3. 협회 및 협회에 등록, 가맹된 프로모터, 팀, 선수(회원 및 회원단체)간 발생하는 제반 분쟁의 조정 및 유권 해석 관련 사항
- 4.5. 기타 위원회 목적과 모터스포츠 발전에 관련된 사항

제2장 위원회 소집 및 구성

제5조(소집)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5.1. 협회 등기 이사 1인 이상, 혹은 사무국이 제청할 수 있고, 이사 3인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조(구성)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1. 위원장 1인
- 6.2.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6.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본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6.4. 위원은 모터스포츠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자, 법률전문가(변호사), 학식과 덕망이 있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중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 6.5. 본회 회장은 위원이 질병, 실정법위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직무)

- 7.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7.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3.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8.1.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사안 처리가 완료된 이후 만료된다.

제9조(회의소집) 본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표창

제11조(포상대상)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국내 모터스포츠 보급, 육성 등 발전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제12조(종류)

12.1. 본회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공로상

감사패

표창

오피셜상

선수상

단체상

12.2. 위와 별도로 각 부문별로 특별히 우수한 자 및 단체에 별도 포상이 가능하다.

12.3. 정부 포상 및 기타 단체의 표창의 경우 별도 심의하여 추천한다.

제13조(절차) 세부적인 포상기준 및 추천 절차는 당해 년에 본회 사무국에서 이사회 또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별도로 정한 포상기준 및 선정에 따른다. 단 공식 시상식 종목 중 외부 인사 및 기타 위원회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본 위원회의 심의 및 소집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14조(표창시기) 표창의 시기는 본회 시상식일로 한다.

제4장 징계

제15조(증거우선)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제16조(심의기관)

16.1. 협회가 인정하는 징계심의 기관은 아래와 같다.

-본 위원회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

-각 대회 조직위원회

16.2. 각 대회 조직위원회는 각 단체의 관할 범위내의 징계 사항에 대하여 1차 심의 및 징계사항을 관장한다.

16.3.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는 본회가 관장하는 징계사안 중 1차 혹은 2차 심의를 다루는 기구로서, 각종 사안에 대한 최종 심의 및 필요한 징계 처분을 다룰 수 있다. 본 위원회 결정 이전 동일 사안에 대한 각 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자체 징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추가 징계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한다.

제17조(징계종류)

17.1.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예 따라 달리 구분한다.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벌금

-경징계 : 견책

17.2. 팀 관계자(감독, 미케닉 등)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벌금

-경징계 : 견책

17.3. 오피셜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중징계 : 출전정지, 강등, 자격정지, 제명

-경징계 : 견책

17.4. 기타 단체 및 회원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벌금

-경징계 : 견책

17.5. 벌금 징계시 한도는 별도의 유형별 징계기준을 따르되, 납부 시기를 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된 벌금은 협회 안전기금에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협회장이 용도를 정할 수 있다.

제18조(심의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18.1.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

18.2. 신고 또는 제소 받은 비위 사실

18.3. 기타 본회 또는 위원회에서 징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

제19조(징계 심의 및 심의 비용)

19.1 징계 심의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의할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9.2. 회원 단체 및 회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질 경우 관련 소요 비용은 요청 시점에서 요청자가 부담한다. 소요 비용은 협회 사무국이 결정한다.

제20조(출석 및 진술권 부여)

- 20.1. 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에게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개최사실을 서면 혹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 20.2. 위원회가 징계를 심의, 의결할 때에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 제출 등의 방법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20.3.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또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에 증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위원회 출석이나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20.4. 위원회에 증빙자료, 기타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전일오후 1시 이전까지 이를 제출해야 한다.
- 20.5. 징계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이용 가능한 증거자료를 참고하여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
- 20.6. 징계 심의 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가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심의 대상자 소속 단체의 대표 및 관련자에게 서면 혹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관련자 제외) 징계 심의 대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는 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본문에서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자인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감경 및 가중)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는 징계 심의 대상자의 과거 행적, 정상 등을 참작하여 유형별 징계 기준보다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으나 감경은 2분의 1, 가중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종전 징계의 집행이 종결된 이후, 유사한 위반행위로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감경사유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3조(결과 통지 및 보고)

- 23.1. 본회는 징계의 결정이 있는 후 그 결과에 대해 징계 대상자 본인 및 소속 단체의 대표가 기재한 서면, 문자 메시지,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만일, 대상자 본인 및 소속단체가 기재한 주소, 팩스, 이메일, 휴대번호등으로 통지를 하였으나 도달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홈페이지 공시로 통지할 수 있다.
- 23.2. 각 대회 조직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하여 결정한 경우, 해당 징계심의 자료를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징계 의결 및 효력발생) 징계는 당사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징계결정의 최종 확정일까지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

제25조(재심 청구)

- 25.1. 징계 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대상

자 이외 제3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25.2. 재심 요구는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사무국이 정한 사전 심의 소요 비용 납부가 이 기간내 완료되어야 받아들여진다. 심의 소요 비용은 재심의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는다.

25.3. 재심 요구를 받은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절차에 따라 재심하여야 한다.

25.4. 재심위원회 구성 및 진행은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첫번째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배제된다.

25.4. 재심청구에 의한 본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5장 분쟁조정

제26조(관할 대상)

26.1. 본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관할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사건의 최종 발생일이 30일 이상 경과한 사건은 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6.2. 위원회의 관할 사항이 아닐 경우,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알리고 당사자들이 적절한 조정, 중재 기관을 찾도록 통보한다.

제27조(적용 규정 및 법률) 위원회는 관련 심리 및 결정을 할 때 본회와 FIA의 정관과 규정을 적용하고 관계법령과 당사자간의 계약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제28조(비밀 유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심리 진행상 심리에 참여하게 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모든 사실 및 기록에 대해서 언론 및 기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

제29조(위원 기피 및 제척 사유)

29.1.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29.1.2. 해당 분쟁의 일방 당사자와 직접적 혹은 간접적 또는 개인적이거나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으로서 이해 관계가 있을 경우

29.1.3. 해당 위원과 관련 있는 팀이 연관되어 있거나 분쟁의 일방 당사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을 경우

29.1.4. 기타 결정의 공정성에 현저한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9.2. 위원회 위원은 본 규정 제29조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 참석을 회피하여야 한다.

29.3. 기피신청 사유가 있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관련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피신청자격 심의 요청 문서에는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9.4.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정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29.4.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신청이 된

위원을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

29.5. 기피신청 요청 수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있을 동안, 해당 위원이 참석하여 결정한 해당 분쟁에 대한 위원회 결정은 모두 무효로 본다.

제30조(대리인 선임) 분쟁당사자는 분쟁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대리인은 변호사 및 법정 대리인으로 하고 위원회의 허가에 따라 변호사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도 무보수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31조(문서의 제출 및 기한)

31.1.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통지는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 신청시 기재한 팩스나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31.2. 분쟁 관련 각종 기한은 위원회가 정하되, 그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협회의 휴무일과 겹칠 때는 다음 업무일을 마감일로 한다.

31.3. 분쟁의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맞추어 분쟁 신청 문서를 제출한다.

31.3. 1. 분쟁 당사자(본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 이메일, 팩스 번호

31.3. 2. 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전화, 이메일, 팩스번호 및 분쟁당사자를 대리한다는 위임장

31.3. 3. 분쟁 관련 통지를 받을 수령인 및 수령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31.3. 4. 분쟁에 대한 설명 및 본건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

31.3. 5. 분쟁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

31.3. 6. 분쟁과 관련된 문서 및 기타 증거 자료

31.3. 7. 금전적 분쟁일 경우 정확한 금액(계약금, 이적료 등)과 그 영수증 혹은 입금증

31.3. 8. 신청서 작성 일자과 분쟁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법적 대리인이 있을 경우 법적 대리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31.3. 9.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분쟁조정 보증금 3,500,000원 입금증

31.4. 분쟁조정이 기각되거나 제기된 뒤 철회되었다면, 항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분쟁 심리에 의해 분쟁당사자의 주장이 일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위원회가 결정한 보증금의 일부를, 모두 인정되면 심의 비용을 공제한 보증금 전부를 각 반환한다.

31.5.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 위원회 또는 본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분쟁당사자는 해당 기한까지 보완 내지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1.6. 본 규정 31항에 정한 시한까지 보완되지 않거나 해당 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기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2조(심리 절차 지휘)

32.1. 제출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과 위원은 사안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한 후에 해당 사건의 결정문을 작성한다.

32.2. 심리 및 심리 절차는 위원장이 지휘하도록 한다.

32.3. 위원회는 당사자를 공정히 대하고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및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본 규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32.4. 위원장은 심리 절차 진행에 필요한 증인이 있을 경우 직권으로 출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관련자에게 심리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심리 일시 및 장소)

33.1. 심리 일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심리 장소는 원칙적으로 본회 내 비공개 장소로 한다.

33.2. 심리 일시와 장소(변경되는 경우 포함)는 심리 개시 5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33.3. 위원장은 분쟁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심리 일시 및 장소에 분쟁당사자의 출석권 및 그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34조(증거)

34.1. 분쟁당사자는 그 청구 또는 방어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34.2. 분쟁당사자는 자기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 또는 감정인의 임의출석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과 협의하여 증인신청이나 감정인 신청의 허부를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3. 위원회는 심리결과 사안이 결정을 하기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판단될(성숙한)때 또는 절차 속행이 불가능하여 중단해야 한다고 인정할 때는 심리를 종결하고 결정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34.4.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하는 경우 현장이나 또는 물건 등에 대하여 검증을 할 수 있다.

제35조(심리 종결과 조정 결정)

35.1. 위원회는 심리를 종결한 날부터 30일 내에 조정결정을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결정일 시한 이전에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35.2. 분쟁조정결정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5.3. 조정 결정문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 간사가 작성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한 후, 협회의 공문에 첨부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당사자 쌍방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 성명 및 주소
- 위원회 위원 이름
- 주문
- 결정의 이유 (생략 가능함)
- 결정 연월일

35.4. 조정 결정문은 분쟁당사자가 기재한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35.5. 심리 및 조정 결정 결과에 근거하여 분쟁으로 인한 간접 손해 비용과 분쟁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36조(화해) 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가 화해를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화해하였다는 사실, 일시, 장소, 참석자, 화해내용을 적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이를 첨부하여 본회 공문으로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37조(규정 해석)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장 부칙

제3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상벌및분쟁조정위원회 유형별 징계 기준]

구 분	유 형	징 계 기준
선수	규정위반 및 스포츠맨십 저해, 명예훼손 및 대회 권위, 협회 권위 실추 유발 행위(경징계급)	서면 경고
	심사 판정불복 및 폭언, 심각한 명예훼손 및 대회권위, 협회 권위 실추 유발 행위, 타 드라이버의 부상을 유발한 위험한 경기 운영 행위	선수 자격 정지 3~5개월 혹은 벌금 500만~900만원
	시설물 및 기물 파괴	선수 자격 정지 6~11개월, 혹은 벌금 1,000만~2,000만원
	모든 폭력 및 폭행	선수 자격 정지 1년 ~영구제명
	승부 조작	선수 자격 정지 2~10년, 영구 제명
팀 (감독 및 미케닉 등)	규정위반 및 스포츠맨십 저해, 명예훼손 및 대회권위, 협회 권위 실추 유발 행위(경징계급)	서면 경고
	심사 판정 불복 및 폭언, 심각한 명예훼손 및 대회권위, 협회 권위 실추 유발 행위 안전과 관련된 조치 미비 등 팀 조직의 문제로 부상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참가 정지 3~5개월 이상 혹은 벌금 500만~900만원
	시설물 및 기물 파괴	경기 참가 6~11개월 혹은 벌금 1,000만~2,000만원
	모든 폭력 및 폭행	경기 참가 정지 1년~영구제명
	승부 조작	경기 참가 정지 2~10년, 영구 제명
오피셜	규정위반 및 스포츠맨십 저해, 명예훼손, 협회 권위 실추 해당 행위(경징계급)	서면 경고
	심각한 경기진행 미숙, 심각한 명예훼손 및 대회권위, 협회 권위 실추유발행위	오피셜 자격 정지 3~5개월
	시설물 및 기물 파괴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1~2단계 강등 및 자격 정지 6~11개월
	모든 폭력 및 폭행	오피셜 라이선스 등급 1~2단계 강등 및 오피셜 자격 정지 1~10년, 영구 제명
	불공정한 심판행위 (고의적 부정행위)	무기한 자격 정지
단체 및 기타 회원	규정위반 및 스포츠맨십 저해, 명예훼손 해당행위	서면 경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협회 및 모터스포츠 권위를 실추시킨 제반 행위	경기 출입금지 및 자격정지 3~5개월 혹은 3,000만원이하 벌금
	심판 판정 불복 및 경기 방해	경기 출입금지 및 자격 정지 6개월, 혹은 3,000만원~5,000만원 이하의 벌금
	모든 폭력 및 폭행	경기 출입금지 및 자격 정지 1~10년,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

※상기 징계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상별및분쟁조정위원회 유형별 포상 기준]

구 분	포상 기준
드라이버상	해당연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드라이버에게 주는 상
오피셜상	해당연도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오피셜에게 주는 상
기록상	해당연도 유의미한 기록을 세운 드라이버에게 주는 상
여성드라이버상	해당연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성 드라이버에게 주는 상
레이싱팀상	해당연도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공인 레이싱팀에게 주는 상
공로상	본회에 소속되어 모터스포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중 퇴임한 자에게 주는 상
감사패	모터스포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끼친 자, 각종 모터스포츠 대회 유치 등 모터스포츠 활성화에 공헌이 큰 자에게 주는 상

